

寄附金入學은 許容되어야 한다

金 東 建
(서울大 行政大學院)

1

大學教育이 갖는 기능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대학교육을 받는다는 것은個人的投資이며 동시에 社會的投資이기도 하다.

大學財政을 꾸려 가는 데 있어서學生個人, 學父母, 社會團體와 政府 그리고 여러 公共機關에서 그 부담을 共히 함께 치고 있는 것도 大學教育이 갖고 있는 이와 같은 개인적·사회적 양면의 특성 때문인 것이다.

本欄에서는 私立大學 教育의 재원 조달 방안을 논의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私立大學財政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이란 대학 운영이 학생의 納入金과 手數料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1985년도의 경우 사립대학 總歲入의 82.3%가 學生負擔이었는가하면 政府支援은 1%에 불과하

였다. 따라서 나머지 16.7%가 財團으로부터의 轉入金 및 寄附金 등에 의하여 충당되었던 것이다.

외국 私立大學의 경우는 어떠한가? 美國의 사립대학은 1970년도에 學生負擔率이 36% 정도였고, 政府 부담과 財團 부담이 각각 22%, 23%씩이며, 寄附金이 차지하는 비중이 18%나 되었다. 가까운 日本의 사립대학 경우에도 1980년도에 학생부담률이 44% 정도였으며, 寄附金과 補助金이 각각 2.5%, 15%씩 되었다. 이와 같이 외국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私立財政은 지나치게 학생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에, 재단부담이 극히 낮으며, 政府補助와 寄附金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464개의 고등교육 기관 중에서 363개 기관이 私立이며,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총 학생수의 75%가 사립학교 학생이고, 전

체 교수의 70% 정도가 사립학교 교수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高等教育은 그의 3/4을 私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私學의 財政을 소홀히 하면서는 한국 고등교육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재정을 學生負擔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아 그 자체가 커다란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며, 무엇인가 재원 조달에의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國·公立, 私立을 막론하고 대학교육의 質的向上을 위하여 大學教育費의 규모가 증대되어야 할은 당연하다. 여기서 私學財團으로부터의 재정 지원 및 國庫에 의한 재정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발견된다. 國庫支援은 우선 大學敎育의 均等化에 그 일차적인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며, 일차적

인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으면 그 다음으로는 대학들간의 機能分化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研究機能, 大學院 중심 교육 등에 역점을 두고자 하는 교육기관에 국고 지원의 선별적 확대가 요망되는 것이다.

私學財團으로부터의 財政支援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학재단 자체를 육성해야 하며, 그 육성 방향도 전전하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사학재단의 가장 큰 문제점은 收益用 基本財產이 빈약하고 그 收益性도 매우 낮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렇게 수익성이 낮은 기본재산과 사업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각종 稅金이 부과되기 때문에 財團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단으로 하여금 收益用 財產을 확대하도록 긴장함과 동시에 이를 높은 수익성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特惠를 제공하고 이들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租稅를 감면해 주는 제도적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대학의 質的 向상을 위한 재원 조달을 私學財團 및 國庫에만 의존하는 데에는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社會團體와 企業 그리고 卒業生을 포함한 개인들로부터의 寄附金 도금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된다. 이는 사회의 순수한 資本을 교육에 영입시키는 것이기에 대학이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야 할 과제인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 대학과 재단은 먼저 公益機關으로서의 과감한 自我革新을 이룩하고 門戶를開放하는 등 대학 운영을 公開的으로 이끌어 갑으로써 사회로부터 私學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획득하여야 할 것이다. 대학에 대한 존경과 신뢰 없이는 사회와 기업으로부터 어떠한 후援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寄附金에 대한 稅制上의 惠澤도 정비되어야 한다. 그 동안 私學財團에서는 사학재단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각종 國稅 및 地方稅의 減免를 수차례 걸쳐 정부에 전의하여 왔다. 특히 기부금 전액을 개인이나 企業의 經費로 인정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현행 稅法에서는 國·公立學校에 대한 寄附金은 國家機關에 대한 기부로 간주하여 그 전액을 개인이나 기업의 경비로 인정하여 稅制上의 惠澤을 완전히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私立學校에 제공할 경우에는 指定寄附金의 法定限度額 범위내에서만 經費로 인정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만약 사립대에의 기부금이 그 한도액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기업주가 자기 배당금 또는 상여금을 사립대에 기부한 것으로 보고 기업체에는 法人稅, 개인에게는 所得稅를 부과하고 있다. 그 결과 國·公立大學 私立大간에는 기부금의 稅制上 均衡이 깨어져 버렸고 이것이 사립대에 대한 사회의 寄附行爲를 사실상 크게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사립대의 기부금을 전액 經

費로 인정할 경우 사회·문화·복지·예술·자선 등 公益性을 떤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特典을 확대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대학을 지원·육성한다는 차원에서 私立大學의 寄附行爲는 국·공립 대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3

이처럼 私立大學의 財政을 改善하기 위해서는 일반 사회로부터의 寄附金이 장려되어야 하며, 또한 이를 위한 誘導裝置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入學을前提로 하는 寄附金을 私立大學에 허용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寄附金入學은 이미 先進外國의 대학에서 시행해 왔을 뿐만 아니라 사학의 成長 및 發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6차 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 속에서 사립대의 寄附金入學制 실시가 언급되어 있으며, 현재 教育改革委員會에서도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구체적 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을 선진 외국의 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 올린다는 것은 현존의 財政構造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사학재단을 육성하고 이들

이 가지고 있는 保有財產을 활용하여 재산수입과 사업수입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몇몇 되지 않는 대학에 한한 경 우일 뿐이다. 전반적으로 수익 성 높은 保有財產이 미비한 私學財團이 우리의 현실적인 사회 여건 속에서 大學財團에 기여 할 수 있는 힘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私立大學의 재정난을 덜어 주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의 하나가 寄附金入學을 공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條件附 기부를 통하여 사학에서는 그 동안 빙약하기만 하던 施設投資를 확대하고 研究支援 을 강화하여 학생들에게 장학금의 혜택 범위를 네폭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다.

大學入學을 전제로 하는 寄附行爲가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 그리 쉽게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아직도 그러한 행위가 社會正義에 어긋나며 교육 기회의 균등을 저해하고, 빈부의 격차로 말미암아 국민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뿌리 깊은 社會不信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로서는 이러한 寄附行爲가 어느 특정인 혹은 특정 소수 그룹에 의해 조작되어 운영되기 쉬우며, 亡國之患이라 할 수 있는 投機心理마저 조장한다고 우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진 외국의 私學運營의 歷史的 背景과 그 方式에서 이미 경험하였듯이 우리나라에서도 기부금에 의한 私學

經營은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할 懸案임에는 틀림없다고 하겠다. 기부금이 아무런 條件 없는 것이라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비록 入學과 연결되어 있는 條件附의 性格을 가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의 否定的 측면보다는 肯定的 측면을 우리는 더 重要視하여야 한다.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대학의 公共性과 信賴性이 더욱 높아지고, 따라서 이러한 기부금이 대학에서 순수한 學問研究와 教育의 質的 向上에 사용됨으로써 훌륭한 人材를 양성하고 이들이 다시 사회에 배출되는 형태로 환원됨으로써 대학뿐만 아니라 社會 전체에도 貢獻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어디 이것뿐이겠는가? 기부금을 우선적으로 학생들의 奨學金으로 사용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대학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한다면 몇몇 사람들의 指定入學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되고, 그 效果가 단기 아닌 長期的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될 때 條件附 寄附行爲의 肯定的側面은 더욱 부각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寄附金入學의 許容 그 자체보다도 이것을 어떻게 公明正大하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대학 운영의 확고한 哲學的 姿勢라고 하겠다.

寄附金入學의 허용은 사회 전체의 실질적인 교육기회 확대에 공헌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기회의 확대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의 諸價值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인 平等과 社會正

義를 효과적으로 이루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4

入學을 전제로 한 寄附金制度가 일정한 規則과 基準下에서 공명정대하게 운영될 때 여기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분명한 利得은 대략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私學運營을 학생에 의존하고자 하는 의식에서 탈피하고 학생들의 實質的 教育費負擔을 절감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教育與件과 研究與件의 개선을 위한 投資가 계속적으로 증대될 수 있으며 이렇게 재정투자가 증대됨으로써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公教育費水準이 외국의 유명 대학 수준으로 점차 확대·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세째, 이를 통해 教育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私學의 教育 및 研究與件이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는 매우 落後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圖書館을 예로 들어 보자. 대학의 도서관은 캠퍼스의 중심체로서 교수이전 학생이전 학교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곳에서 형성되어야 한다. 선진 외국 대학의 대부분의 도서관이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가장 안락하고 평안한 곳이 도서관이며, 이 속에서 하루종일 지내도 조금도 불편이 없다. 풍부한 서적이 있으며 무엇이든지 공부와 관련된 문제가 도

서관에서 해결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어떠한가? 우선 의존할 만한 質籍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시설마저 엉망이므로 조금도 정이 가지 않는 곳이 도서관이다. 圖書館이 학생들의 讀書室로 변한 지가 오래전이고 그나마 조용히 책을 읽을 만한 실내환경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설정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대학의 教育과 研究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이 모든 것이 財政의 問題이며, 교육 및 연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劇期的인 措置가 요청되는 것도 이 때문인 것이다.

寄附金入學制의 도입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보장은 물론 없다. 이 제도가 지금 당장 도입될 입장도 더우기 아닌 것이다. 이것이 앞으로 몇

년 후에 가능하게 될지는 關係當局, 大學과 財團 그리고 社會各界各層의 노력과 협조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좌우되겠지만, 이 제도의 정착에 原則的인 合意와 準備가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先決事項에 각별한 有意가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로 學校運營의 自律性이 보장되어야 한다. 寄附金入學制는 公開的・自律的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정부가 이 제도의 운영에 이태라 저태라 간여한다면 이 제도는 성공할 수가 없다. 둘째로 대학 및 재단은 이 제도가 단순히 大學運營의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차원을 넘어 기부금제도가 궁극적으로는 社會奉仕에 이바지한다는 확고한 社會的 教育觀을 정립해야 하며, 또 그렇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教育의 信賴性을 위한 대학 스스로의 절대적 노력 없이는 이 제도에 대한 사회로부터의 긍정적인 호응을 얻을 수 없다. 세째로 寄附者의 姿勢 또한 바뀌어져야 한다. 단순히 자기 자식을 대학에 入學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진정한 寄與心의 일환으로 이 제도를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寄附金에 해당하는 금전을 자기 자식에게 직접 물려주었을 때 그 돈으로 자기 자식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을, 굳이 대학에 기부하였다면 이에 대한 사회적 답례로서 大學入學을 우리는 기꺼이 容認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私立大의 寄附金入學制度의 장단점을 살펴볼 때 이 제도의 긍정적 측면이 훨씬 높다고 판단되어 이 제도의 허용을 찬성하는 바이다. *